

# 『국체의 본의』에 관한 일고찰

형진의\*

(e-mail : hjini117@hnu.kr)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국체의 본의』에 나타난 ‘만세일계의 천황’ |
| 2. 『국체의 본의』의 개요        | 5. 마치며                      |
| 3. 『국체의 본의』의 편찬 배경과 과정 |                             |

キーワード：国体の本義(Kokutai no hongi), 国体(Kokutai), 天皇(Tenno), 万世一系(Unbroken imperial line), 思想(Idea)

## 1. 들어가며

『국체의 본의』는 1937년 5월, 일본의 문부성 사상국(思想局)이 주도하여 간행한 ‘국체’ 사상 책자이다. ‘국체’란 천황제를 말한다. ‘국체’ 사상의 핵심은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사상이다.

이 책의 간행 목적은 책머리에 “본서는 국체를 명징明徵하게 하고, 국민정신을 함양·진작해야 할 각하刻下의 급무를 감안하여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듯이 ‘국체의 명징’과 ‘국민정신의 함양·진작’에 있었다.

1930년대 중반의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2년 만주국 건립 등 군부가 세력을 확장하며 제국으로서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며, 국내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헌법학설로 자리 잡고 있던 ‘천황기관설’을 부정하고 ‘국체명징운동’을 일으키며 전시체제를 위한 국체사상 공고화에 매진하던 시기이다. 『국체의 본의』는 이 과정에서 ‘국체명징’을 위한 책자로 편찬되어 학교교육은 물

\* 韓南大学校教養教育大学 副教授, 日本語学·社会言語学

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패전 이후인 1945년 10월 5일 문부성이 폐기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연합국 사령부(GHQ)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며 한동안 거론되는 일 조차 드물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 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이 2000년 이후, 즉 일본의 심각한 우경화와 함께 다시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해설서와 현대어번역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급기야는 2009년에 발간되어 20쇄까지 발간된 『우리 두뇌를 단련시키는 법-필독 교양서 400권(ぼくらの頭脳の鍛え方)』(立花隆·佐藤優著, 文春新書)에는 성서, 코란과 함께 ‘교양 필독서 100선’에 오르며 ‘필독’해야 하는 책으로 부상했다.

1990년대, 이른바 ‘버블 붕괴’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급격히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일본의 일보 우익사관을 주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메이지(明治), 쇼와(昭和) 시대의 ‘강한 일본’에 대한 향수가 강해졌다. 다시 한 번 그런 시대의 도래를 강하게 열망하는 분위기가 고조면서 그 시절의 ‘국체’ 사상교육 책자인 『국체의 본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에 왜 다시 ‘국체’인가를 논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체의 본의』를 재 고찰하기로 한다. 일본 정부의 교육기본법 개정, 개헌 논의, 테러대책법안(일명 공모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국체의 본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80년 전에 간행되었지만 위의 일련의 일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로는 쓰치야 다다오(土屋忠雄, 1978)와 곤노 노부유키(昆野伸幸, 2009), 가케가와 도미코(掛川トミ子, 1976)를 기반으로 편찬 과정과 문부성의 교화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사토 마사루(佐藤優, 2009)와 마에다 게이치(前田慶一, 2014)를 통해 왜 오늘날 『국체의 본의』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가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사토 마사루는 그의 저서 『日本国家の神髓—禁書『国体の本義』を読み解く』(2009)에서 “국가에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있다. 신제국주의 게임 룰도,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먹느냐 먹히느냐이다. 일본 국가로써는 자국과 자국민이 먹히지 않도록 총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사상이 필요하다.-중략- 『국체의 본의』는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사상서이다”라고 주장하며 ‘국체’ 사상의

전도사로 나섰고, 이후 다양한 현대어 번역본과 해설서가 봇물 터지듯이 소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국체의 본의』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편찬 과정을 분석하고, ‘만세일계의 천황’에 관한 기술을 중심으로 『국체의 본의』에 나타나는 ‘천황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국체의 본의』의 개요

『국체의 본의』는 국관 156쪽으로 구성은 ‘서언’, ‘제1장 대일본 국체’, ‘제2장 국사에 현현된 국체’, ‘결어’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현대 일본과 사상문제’, ‘국체의 자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 일본의 시대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국체’를 자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1장은 ‘1.건국(肇国)’, ‘2.성덕’, ‘3.신절’, ‘4.조화와 진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의 건국의 정신과 신민의 도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장은 ‘1.국사를 일관하는 정신’, ‘2.국토와 국민생활’, ‘3.국민성’, ‘4.제사와 도덕’, ‘5.국민문화’, ‘6.정치, 경제, 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덕, 교육, 종교, 문화 등에 나타나는 ‘국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결어’는 ‘서양사상의 특질’, ‘동양사상의 특질’, ‘신일본 문화의 창조’, ‘제반의 쇄신’, ‘우리의 사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의 ‘국체’ 사상과 그 밖의 문화권의 사상과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면서 ‘국체’사상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국체의 본의’를 밝혀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체의 본의』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머리에 다음과 같이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나, 본서는 국체를 명징明徵하게 하고, 국민정신을 함양·진작해야 할 각하刻下의 급무를 감안하여 편찬했다.

하나, 우리의 국체는 광대하고 심원하여, 본서의 서술이 그 진의를 다 드러낼 수 없음이 송구스럽다.

하나, 본서의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인용문은 주로 『고훈고사기古訓古事記』, 『일본서기 통석日本書記通釋』의 훈에 따랐고, 신들의 이름은 주로 『일본서기』에 따랐다. (『국체의 본의』 24쪽)<sup>1)</sup>

즉, 이 책은 ‘국체’를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편찬의 목적인다고 밝히며, 또한 156쪽의 서술로 ‘국체’의 넓고 심오함을 다 드러낼 수 없음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일본 ‘국체’의 ‘광대, 심원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체’의 근거를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서 가져왔음을 밝히면서 ‘국체’ 사상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본문에서 ‘건국’과 관련한 신화나 ‘만세일계의 천황’에 관한 내용의 근거는 모두 이와 같은 고서와 『만요슈万葉集』, 조칙(詔勅) 등을 전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 고서들이 기본적으로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체의 본의』는 1937년 4월에 30만 부를 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패전까지는 약 200만 부가 간행되었다.<sup>2)</sup> 당시 식민지 조선에도 3,012부, 타이완에도 5,376부가 배부되었다. 문부성은 『국체의 본의』를 배부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수신, 국사, 지리, 국어 교과목에 이 내용을 함께 가르칠 것과 축제일의 훈시, 강연회, 강습회 등을 통해 이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지시하고, 중등, 고등학교에서는 수신, 공민, 교육, 국어한문, 역사 및 지리 교과목에 이 내용을 함께 가르치고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의 훈시, 강연회, 강습회를 통해 이 내용을 확산 시킬 것을 지시했다.(土屋[1978;10~12쪽]) 즉, 『국체의 본의』는 정규 교과서는 아니었지만 모든 교육의 선봉에서 ‘국민 교화’와 ‘국민정신 함양’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 3. 『국체의 본의』의 편찬 배경과 과정

이와 같은 『국체의 본의』는 1935년 11월 16일에 문부성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교학쇄신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집필되었다. 이 평의회는 “우리나라의 교학은 교육에 관한 칙어를 받들고, 국체 관념, 일본 정신을 체현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로 삼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입된 외래 사상의 침투에 의해 그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에 다시금 우리나라 교학의 현상을

1) 이하 『국체의 본의』에서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본인 『『국체의 본의』를 읽다』(어문학사, 2017)에서 인용한다.

2) 간행부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300만부 간행되었다는 주장도 있다.(阿部猛, 1999)

검토하고, 본말을 바로잡아 순화, 섭취케 하여, 크게 쇄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하 긴요한 업무로 한다.”<sup>3)</sup>는 것을 임무로 관제 시행된 문부성 자문기관이다.<sup>4)</sup>

즉, 이 시기 문부성과 교학쇄신평의회는 일본 교육의 본질을 ‘교육칙어를 받들고’, ‘국체’와 ‘일본정신의 체현’에 두고 ‘교육 쇄신’을 단행했는데, 『국체의 본의』는 그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전쟁 확대를 위한 사상적 무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본에는 다이쇼(大正, 1912년~1926년) 시대를 전후해 짧게 일었던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교육에서도 학교교육의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민간 교육운동 등의 신교육운동이 일었는데 이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천황기관설 사건’과 그에 따른 ‘국체명징운동’이 있었다.

‘천황기관설’은 ‘대일본제국헌법’에 대한 입헌주의적 헌법학설로 “통치권은 법인인 국가에 있고, 천황은 최고기관으로서 내각을 비롯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필 받으며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학설이다.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1889년에 공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은,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로 시작된다. 이어서 제4조에서는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천황주권’의 국가를 천명한 것이다. ‘메이지헌법’이라고도 불리는 ‘대일본제국헌법’은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이 공포되기까지 약 50여년 간 일본의 헌법으로 존속했다. 주권과 통치권이 천황에게 있는 ‘천황주권’의 국가 체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일본제국헌법’에 대해 1900년 이후 헌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위와 같은 ‘천황기관설’을 제기했고, 1920년대부터는 일본 사회에서 공인된 헌법학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군부와 우익단체들이 이 학설을 천황에 대한 ‘반역’, ‘모반’으로 규정하고, 이 학설을 주도했던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는 ‘학비(学匪)’라고 비난당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당시의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3) 「教学刷新評議會總會議事録」 제1집 6쪽(土屋[1978:1])에서 재인용.

4) 참고로 교학쇄신평의회는 학교를 ‘국체를 기반으로 수련하는 시설’로 규정짓고, 학교에 봉안전(奉安殿) 설치를 정하고 1941년부터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정하는 등, 전쟁 확대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에서 사상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내각은 군부와 우익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1935년 8월 3일에 “천황기관설은 국체의 본의에 반한다”는 1차 성명(국체명징에 관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15일에는 “천황기관설은 싹을 잘라야 한다”는 2차 성명을 발표한다. 이것이 국체명징운동이다.

이 운동으로 천황기관설을 주도하던 미노베 다쓰키치와 그에 동조하던 이치키 키도쿠로(一木喜徳郎) 추밀원 의장,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徳次郎) 법제국장관 등이 1936년에 모두 사직함으로서 일본 헌법의 입헌주의적 해석은 철저히 봉쇄되고 국체 사상이 입법, 사법, 교육, 행정 등 일본 사회 전반을 뒤덮게 된다.

『국체의 본의』는 이와 같이 짧은 기간이지만 잠시 싹을 틔웠던 민주주의 운동과 일본 헌법의 입헌주의적 해석을 제압하기 위해 일어난 ‘국체명징운동’ 과정에서 ‘국체’사상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책자다. 그러나 문부성이 제작하고 각급학교를 통해 배부했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체의 본의』는 1936년 4월 15일에 편찬을 개시하여 1937년 2월 19일까지 3회의 편찬위원회를 거쳐 완성되었다. 집필은 교육, 철학, 신도, 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土屋[1978:5 쪽])

- 요시다 구마지(吉田熊次) 국민정신문화연구소 연구부장(교육)
- 이지마 다다오(飯島忠夫) 가쿠슈인대학 교수(한학)
- 이노우에 다카마로(井上孚麿) 국민정신문화연구소 연구원(법률)
- 우이 하쿠슈(宇井伯寿) 도쿄대학 교수(불교)
- 오쓰카 다케마쓰(大塚武松) 유신사료편찬관(국사)
- 고노 세이조(河野省三) 고쿠가쿠인대학 학장(신도)
- 기히라 마사요시(紀平正美) 국민정신문화연구소 연구원(철학)
-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도쿄대학 명예교수(국사)
- 사쿠타 쇼이치(作田莊一) 교토대학 교수(경제)
-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潜一) 도쿄대학 교수(국문)
- 후지카케 시즈야(藤懸静也) 도쿄대학 교수(예술)
- 미야지 나오카즈(宮地直一) 고증관(신도)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 문학박사(국문)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도쿄대학 교수(윤리)

위의 집필진의 면면에서 주목할 점은 ‘국민정신문화연구소’에서 세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도쿄대학 교수가 다섯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문적 권위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체의 본의』 편찬에서 국민정신문화연구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민정신문화연구소는 1932년에 세워진 연구기관으로 ‘학생 좌경화’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체, 국민정신의 원리를 천명하며, 국민문화를 발양하고, 외래사상을 비판하여 막시즘에 대항할 수 있는 이론체계의 건설을 목적으로하는 유력한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掛川トミ子編 [1976:32쪽])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기관인 것이다.

이 연구소는 1935년 11월 16일에 문부성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교학쇄신평의회와 함께 당시의 문부성의 교학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양기관의 설립 목적과 『국체의 본의』의 편찬 목적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국체의 명징’, ‘국민정신 함양’으로 모아진다.

편찬과정은 1936년 7월 7일 제1회 편찬위원회, 1937년 2월 18일 제2회 편찬위원회, 그 다음 날인 19일 제3회 편찬위원회를 끝으로 4월에 간행된다. 『국체의 본의』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간행된 것이다. 그 논의 과정에 대해 쓰치야(土屋[1978])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3회의 총회를 통해 논의는 국체의 개념이나 정의를 엄밀히 토의하거나 헌법상의 국체, 법률용어로서의 국체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각 위원의 이러한 태도는 천황기관설을 둘러싼 논쟁처럼 되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국체라는 말을 넓은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보고, 그 존엄함은 위원들이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료하게 하는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쪽으로 의사진행 상 능률적이라는 식으로 전환되었다. (土屋[1978:4쪽])

즉, 3회에 걸친 편찬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체’에 대한 정답인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를 미리 정해놓고, 당시의 논리로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로서 ‘국체’를 논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일본의 ‘국체’ 사상은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허구라는 것이 ‘상식’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위의 쓰치야의 지적에서도 “국체의 개념이나 정의를 엄밀히 토의하거나 헌법상의 국체, 법률용어로서의 국체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국체’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면서도, 문부성 교학국의 의도에 맞춰 의식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편찬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문부성 교학국은 『국체의 본의』 간행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해설총서를 발간하며 ‘국체’ 사상의 확산을 꾀했다.

『국체의 본의 해설총서』

이름	서명	간행처	간행일
요시다 구마지 吉田熊次	『明治以降詔勅謹解』	教学局	1937年12月
이지마 다다오 飯島忠夫	『日本の儒教』	教学局	1937年12月
고노 세이조 河野省三	『我が国体と神道』	教学局	1938年3月
히사마쓰 센이 치久松潜一	『我が風土・国民性と文学』	教学局	1938年3月
기히라 마사요 시紀平正美	『我が国体における和』	教学局	1938年3月
오구시 토요오 大串兎代夫	『帝国憲法と臣民の翼賛』	教学局	1938年12月
야마다 요시오 山田孝雄	『肇国の精神』	教学局	1939年3月
후지카케 시즈 야藤懸静也	『日本の美術』	教学局	1939年3月
사쿠타 쇼이치 作田莊一	『我が国体と經濟』	教学局	1940年3月
쓰지 겐노스케 辻善之助	『御歴代の聖徳に就いて』	教学局	1940年6月
기히라 다다오	『我が邦に於ける家と』	教学局	1941年3月



시紀平正美	『国』		
하나야마 신쇼 花山信勝	『日本の仏教』	教学局	1942年3月
야마다 요시오 山田孝雄	『国体と修史』	教学局	1943年3月

위의 해설총서의 저자는 대부분 『국체의 본의』의 편찬위원이고 오구시 토요오 등은 국민정신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이며 편찬촉탁으로 『국체의 본의』 편찬에 참가했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정신문화연구소와 교육쇄신평의회, 문부성 교학국이 편찬의 시종을 주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기관이 지향한 일본교육의 본질은 ‘만세일계의 천황의 통치’와 ‘신민으로서의 국민정신의 함양’이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만세일계의 천황’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 4. 『국체의 본의』에 나타난 ‘만세일계의 천황’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만고불역의 국체이다. 그리고 이 대의를 기반으로 일대 가족국가로서 억조億兆가 일심으로 성지聖旨를 받들고 명심하여, 능히 충효의 미덕을 발휘한다.(『국체의 본의』 31쪽)

『국체의 본의』는 위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국체’를 명백히 하는 것과, 그 ‘국체’를 떠받드는 ‘국민정신의 함양’에 맞춰져 있는데, 위 문장에서처럼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 대의를 기반으로 일대 가족국가로서 억조億兆가 일심으로 성지聖旨를 받들고 명심하여, 능히 충효의 미덕을 발휘”하는 정신을 함양하도록 첫 머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황위는 만세일계의 천황의 직위이고, 오로지 한 계통의 아마쓰 히쓰기天ツ日

嗣[태양신의 혈통을 계승한 천황의 직위]이다. (『국체의 본의』 39쪽)

- 높으신 자리에 오르시는 천황이 만세일계의 황통에서 나신 것은 건국의 근본이고 신칙에 명시하신 바이다. 즉 아마테라스 대신의 자손이 대대로 이 지위에 오르시는 것은, 영구히 변함없는 대의이다.(同 40쪽)
- 신들은 황손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다. 이로써 이 나라는 천지가 열린 초기부터 천황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同 43쪽)
- 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은 신의 뜻대로 전해 내려온 큰 도리에 따라 다스리시고 만세 불역의 근본을 세우시어 유일한 계통의 영원무궁한 황위를 전하여 이로써 짐에게 이르렀다.(同 44쪽)

이와 같이 일본의 천황은 대전제로 ‘만세일계’인 것이다. 신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일본 건국의 근본이며 영원불변한 진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고토쿠(孝德)천황의 조칙(위 인용문 43쪽)이나 쇼와 천황의 즉위식 칙어(同 44쪽)인데, 이러한 조칙이나 칙어가 바로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만세일계의 천황’이라는 것은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허구인 것이다. 더욱이 그 천황이 일본을 직접 통치한 것은 역사의 사실로도 잘 들어나는 것처럼 ‘다이카 개신’(645년), ‘겐무의 중흥’(1334년), ‘메이지 유신’(1868년)이 단행되었던 시절뿐이다. 나머지 기간은 유력한 호족이나 귀족 혹은 무사가 통치하는 시대였다. 『국체의 본의』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그 기간을 “황송하게도 황실이 쇠퇴한 동안”이라고 서술하며 그 기간에도 “천양무궁의 황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국체의 본의』 96쪽)고 서술한다.

그리고 천황의 현어신(現御神) 혹은 현인신(現人神)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리하여 천황은 황조황종의 마음을 그대로 체현하여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시다. 이 현어신現御神(明神) 혹은 현인신現人神이라고 말씀 올리는 것은 이른바 절대신이나 전지전능한 신 같은 의미와는 달리, 황조황종이 그 후손이신 천황에게 나타나시고 천황은 황조황종과 일체가 되시어 영구히 신민과 국토의 생성 발전의 근원이 되시고 한없이 존귀하고 황송한 분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 (『국체의 본의』 45쪽)

『국체의 본의』가 서술하는 천황이 ‘살아계신 신’, 즉 ‘현어신’ 혹은 ‘현인신’인 이유는, 천황이 황조황종의 후손이라는 점, 그 천황이 황조황종과 일체를 이룬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은 일본 천황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로부터 비롯되는 황조황종과 혈통으로 이어졌고, 황조황종의 유훈을 받들어 황조황종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현인신’이라는 것인데, 이 혈통으로 이어진 ‘만세일계’라는 것은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역사적 사실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모든 법을 초월하는 ‘천황 친정親政’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서술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모두 이 황실전범과 제국헌법을 기초로 성립한다. 개개의 법전 법규에는 직접 천황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있고, 천황이 위임해서 제정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천황의 능위稜威에 근원을 두고 있다. (중략) 따라서 모든 법은 천황의 능위에 귀착한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모두 우리 국체의 표현이다.(『국체의 본의』 147쪽)

『국체의 본의』를 통해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 ‘만세일계의 천황’은 초법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에 도형식적이거나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만큼 『국체의 본의』의 이와 같은 초법적인 서술에 비판도 있었다. 당시 중의원 의원이었던 하라 소베에(原惣兵衛)는 의회 질의에서 “대체 법치주의도 아니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原[1937:8쪽])고 비판했고, “국체명칭에 있어서의 필연적 경향인 과학적 견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판해야 하는 것이 있다. (중략) 특히 우리나라의 법은 모두 우리 국체의 표현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里見[1937:54쪽])와 같은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큰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국체의 본의』를 통해 일본의 ‘국체’ 사상이 개념화되었으며,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마치며

일본의 제85대 총리인 모리 요시로(森喜朗)는 2000년 5월 15일 총리대신으로 참석한 <신도(神道)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의 인사말에서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아사히신문 등의 미디어가 “국민주권과 정교분리 원칙이 어긋난다”(朝日新聞, 2000年5月16日)며 비판했고, 모리 총리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라는 것은 일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으로, 전후의 주권재민과 모순되지 않는다”(同, 2000年5月16日)며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논란 이후, 같은 해 7월에 가지 노부유키(加地伸行) 편저의 『일본은 ‘신의 나라’가 아닙니까?』(小学館, 2000)라는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제1부에서 「‘신의 나라’ 발언 사건」을 시작으로 제2부에서는 「‘신의 나라’와 일본인」, 「‘신의 나라’ 발언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이야말로 21세기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좋은 기회다」, 「시대의 ‘마음’을 표현한 수상의 발언」, 제3부에서는 「‘신의 나라’와 일본 :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의 나라와 헌법」, 「‘일본은 일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전한 애국심 육성이 시급하다」 등의 글이 실려 있다. 『국체의 본의』의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국체사상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이다.

또한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2012년 4월에 헌법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일본국헌법’ 제1장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한 것을, 개정 초안에서는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고 일본국 및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 국기(国旗) 히노마루와 국가(国歌) 기미가요를 명시하고 “일본국민은 그것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한다. 국기와 국가에 대한 규정을 헌법 제1장에 포함한 것은 국기, 국가=천황제를 명확히 한 것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존중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년(2017년) 3월 31일에는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나 교육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한겨레신문, 4월 2일)라는 전제가 있지만 ‘교육칙어’를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다. ‘교육에 관한 칙어’ 일명 ‘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에 메이지 천황이 반포한 것으로, 황조황종과 천황을 받드는 신민의 도리를 교육하는 내용이다. 『국체의 본의』도 ‘교육에 관한 칙어’를 전적으로 기반으로 한다.

이처럼 잊혀진 듯했던 텍스트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체의 본의』의 편찬과정과 가장 핵심이 되는 ‘만세일계의 천황’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왜 지금 다시 『국체의 본의』에 주목해야 하는지, ‘국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21세기에 어떤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최근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 보수 논객들의 글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형진의·임경화 편역(2017) 『『국체의 본의』를 읽다』 어문학사 p.24, p.31, p.39, p.40, pp.43-45, p.96, p.147.

윤해동(2005) 「‘국체’와 ‘국민’의 거리:탈식민지기의 식민주의」 『역사문제연구』 p.15, p.68.

阿部猛(1999) 『太平洋戦争と歴史学』 吉川弘文館 p.23.

教育刷新評議會總會議事録 第一輯

掛川トミ子編(1976) 『現代史資料 42 思想統制』 みすず書房 p.32.

加地伸行編著(2000) 『日本は「神の国」ではないのですか』 小学館

昆野伸幸(2009) 「戦時期文部省の教化政策—『国体の本義』を中心に」 『文芸研究』 167輯 p.66, p.73.

佐藤優(2009) 『日本国家の神髄』 産経新聞社 p.4, p.21.

里見岸雄(1937) 「寄贈書紹介」 『国学院雑誌』 179号 p.54.

立花隆、佐藤優(2009) 『ぼくらの頭脳の鍛え方』 文春親書 p.86.

土屋忠雄(1978) 「国体の本義の編纂過程」 『関東教育学会紀要』 5号 p.1, pp.4-5, pp.10-12.

原惣兵衛(1937) 『第71回帝国議会衆議院予算委員会議録(速記) 第五回』 p.8.

前田慶一(2014) 『対訳国体の本義』 アイソーソリューション pp.291-297.

文部省(1937) 『国体の本義』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1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계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旨>**

---

## 『国体の本義』に関する一考察

邢鎮義

『国体の本義』は1937年、日本の文部省が刊行した「国体」思想の教科書である。帝国主義の拡張のための精神教育の教科書である。刊行目的は「国体」明徴と「臣民」としての国民精神涵養である。「国体」とは万世一系の天皇が日本を統治するという思想である。そのような日本の「国体」思想は、神話に基づく虚構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体の本義』を通して自明なものとして受け止められ、現在まで続いている。刊行一年目に30万部が刊行され、1945年まで200万部刊行された。朝鮮や台湾などの植民地、占領地にも配布した。文部省は学校の国史、地理、国語などの教科目の内容として教えるよう指示し、各種の行事、講演会、講習会を通して『国体の本義』を広めるよう指示した。このテキストは1945年12月15日にGHQにより禁止図書となった。その後しばらくはあまり言及されることもなかった。しかし2000年代以降、日本社会の右傾化に伴い、『国体の本義』が再び注目され、「国体」思想が浮かび上がっている。『国体の本義』を21世紀の文脈に合わせて再び批判的に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 A study of “kokutai no hongī”

Hyung, Jin-I

“kokutai no hongī” is a textbook of “kokutai” ideolog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Japan in 1937. It was published as a textbook of spiritual education for expanding imperialism. The publication aimed to clarify “kokutai” and cultivate national spirit in “people.” “Kokutai” means the thought Tenno of unbroken rules Japan. Japanese “kokutai” refers to fiction based on mythology. However, “kokutai” thought was clarified in “kokutai no hongī”. In the first year of its publication, 300,000 copies were published. A total of 2,000,000 copies were published until 1945 and distributed to Chosen, Taiwan, and occupied territories. The Board of Education instructed that national history, geography, Japanese, etc. should be taught at schools and that “kokutai no hongī” should be widely disseminated in instructions, lectures, and classes of all types of events. The book was prohibited by GHQ on December 15, 1945. However, after the 2000s, Japanese society has become conservative, and “kokutai no hongī” is being focused upon again and “kokutai” thought is raising. Therefore, “kokutai no hongī” needs to be critically considered.